

OQS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1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변경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 제 2 조(정의)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 4 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17 조① 영 16 조 규칙 7 조	①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table><tr><th>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th><th>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th></tr><tr><td>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 9 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td><td>1.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제 4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td></tr></table>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위험물방치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 9 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1.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제 4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관련기준 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 9 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1. 「국민건강증진법」 제 9 조제 4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 4 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17 조④ 영 18 조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tr><th>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th><th>지켜야할 사항</th></tr><tr><td>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6. 노(爐)·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td><td>별표 1 참조(맨 위장)</td></tr></table> ※ 본 조항(법 17 조)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내용이 본 조항으로 이관되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지켜야할 사항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6. 노(爐)·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별표 1 참조(맨 위장)	관련기준 준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지켜야할 사항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6. 노(爐)·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별표 1 참조(맨 위장)							
제 4 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화재의 예방조치 등	법 17 조⑤ 영 19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able><tr><th>특수가연물</th><th>저장 및 취급기준</th></tr><tr><td>별표 2 참조(맨 뒷장)</td><td>별표 3 참조(맨 뒤장)</td></tr></table> ※ 본 조항(법 17 조)은 소방기본법의 규제내용이 본 조항으로 이관되었음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별표 2 참조(맨 뒷장)	별표 3 참조(맨 뒤장)	관련기준 준수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별표 2 참조(맨 뒷장)	별표 3 참조(맨 뒤장)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2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5 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법 24 조 영 25 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별표 4]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소가 필요한 대통령령[별표 5]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 *영[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뒷장 참조 *영[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 25 조제 2 항 관련): 뒷장 참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법 24 조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다만, 제 1 호 · 제 2 호 · 제 5 호 및 제 7 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 36 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 37 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제 3 호 · 제 4 호 및 제 6 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해당 없음 ☐ 소방계획서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법 25 조 영 28 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2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제 5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 가능 <table><tr><th>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th><th>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th></tr><tr><td>1. 별표 4 제 2 호가목 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td><td>1. 법 제 24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td></tr><tr><td>2. 별표 4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td><td>2.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td></tr><tr><td>3. 별표 4 제 4 호에 따른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td><td>3.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td></tr></tabl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별표 4 제 2 호가목 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1. 법 제 24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별표 4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	3. 별표 4 제 4 호에 따른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해당 없음 ☐ 자체선임 ☐ 대행기관 위탁계약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 별표 4 제 2 호가목 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 층 이상인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 만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 제외)	1. 법 제 24 조제 5 항제 3 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별표 4 제 3 호에 따른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													
3. 별표 4 제 4 호에 따른 3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법 제 24 조제 5 항제 4 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 26 조 규칙 14 조 규칙 15 조 규칙 16 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 24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3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5 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계인 등의 의무	법 27 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 24 조제 5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서장에게 보고.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관계인 등의 업무 수행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 34 조 규칙 25~33 조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포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이수.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 29 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 24 조제 3 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수료증 ☞ 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법 35 조 영 34~37 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 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없음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36 조 규칙 34, 35 조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계획 수립·시행. ② 피난계획에는 피난경로 포함.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		☐ 해당 없음 ☐ 피난계획 수립 ☐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피난계획에 포함사항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방법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1. 연 2 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 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 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4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5 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법 37 조 영 38,39 조 규칙 36~39 조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등”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1 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4 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1) 비디오 교육 2) 비상훈련 : 1 회/년 3) 교육/훈련기록 : 2 년간 보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38 조 규칙 40 조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 37 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당 없음			
	화재예방안전진단	법 41 조 영 43,44 조 규칙 41,42 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 1 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 37 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 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제 41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 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 43 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법」 제 14 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 3 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한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5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 18 조제 2 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터미널
--	--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6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 18 조제 2 항 관련)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착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한다. 3. “노·화덕설비”란 제조업·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및 노·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 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7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목수가연물(제 19 조제 1 항 관련) : 취급기준(덧장 참조)**

품명		수량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펄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벗짚류”란 마른 벗짚·복대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목탄류 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기외부에 물품명·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옷감·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넙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면화류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넙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벗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 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고무류·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20세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것	3,000킬로그램 이상	

OQS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8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 19 조제 2 항 관련)

1.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밖의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수가연물	
화기엄금	
품 명	합성수지류
최대저장수량 (배수)	000톤(00배)
단위부피당 질량 (단위체적당 질량)	000kg/m³
관리책임자 (직 책)	홍길동 팀장
연락처	02-000-0000

-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중 보기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9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 25 조제 1 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3) 지하구
-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10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 25 조제 1 항 관련)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4	제 정 일 자	2022.12.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번호)	0	쪽 번 호	11 / 11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 25 조제 2 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훈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훈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훈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